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1257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김명보,이인영,김모경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 가.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31. 접수 제180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9. 5. 24. B와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24. 5.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2) C은행은 원금 연체를 이유로 2021. 11. 25.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4. 25. C은행에 18,829,9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원고는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차전2085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8,863,640원 및 이 중 18,829,950원에 대하여 2022. 4. 2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B은 2021. 8. 31.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8. 3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31. 접수 제180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의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2021. 9. 29. 계약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대여 원리금 연체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야기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 당시 B은 무자력이 아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B에게 107,880,000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증여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21. 8. 30. 무렵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1. 11. 2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실제로 원고가 2022. 4. 25. C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등), 적극재산은 0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18,829,950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

별지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지층 호 17.0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 9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5분의 9.19

- 끝 -

